

FOR INFORMATION ONLY

OPERATING MANUAL OF THE STANDING JUDICIAL COMMISSION
AMENDMENTS ADOPTED BY THE 50th GENERAL ASSEMBLY
2023

ITEM 1: Amend ***OMSJC 2.12.c*** as follows. – [Updates citation reference to *RONR*.]

2.12

- c. To maintain order and decorum at meetings the procedures and sanctions of *RONR* (12th ed.) 61:6-61:21, shall be available to the Commission, except that the Commission may not suspend the rights of membership or expel a member from the Commission.

ITEM 2: Amend ***OMSJC 4.2*** as follows.– [Reduces time required for calling a non-physical SJC meeting to 14 days.]

- 4.2** In addition to the stated meetings specified in Section 4.1, the Commission may hold special meetings, provided such special meetings shall be called by one of the following methods, to-wit:
- a. The Officers of the Commission may call a special in-person meeting at any time upon at least 30 days' notice, or a special phone or videoconference meeting upon at least 14 days' notice.
 - b. The Commission, at any stated meeting, may announce a call of a special meeting, provided the time and place is specified in the call. A notice of the call of the special meeting shall be sent immediately by the Stated Clerk to all absent Commission members.
 - c. If at least six Commission members request, in writing, a special called meeting, the Chairman and Secretary shall issue a call within 10 days from receipt of the request.

The call of a special meeting shall specify the business to be considered at the meeting, and no other business may be considered except by an affirmative vote of three-fourths of those members present and voting, which in no case shall be less than 13 affirmative votes of members of the Commission. Further, no action may be taken on any case not specified in the call. The Officers may amend the call for the consideration of additional business if notice thereof is sent by mail or electronic means to the Commission members no less than 14 days before the date of the meeting.

No special in-person meeting of the SJC shall be scheduled less than 30 day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call is issued.

~~—Any special called meeting under this Section 4.2 may be held by telephone conference call.~~

[Go to next page.]

참고용

상임 법사 전권위원회 운영지침서 **2023년 제 50 차 총회가 채택한 수정안들**

1 번 항목: 상법위 운영지침 2.12.ㄷ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 [수정 만국통상회의법 인용조항 변경]

2.12

ㄷ. 회의에서 질서와 예절을 유지하게 위하여 새만통법 (제 12 판) 61:6-61:21 까지의 절차들과 제재들이 전권위원회에 제공될 것이다. 단, 전권위원회는 위원의 권리들을 정지시키거나 전권위원회에서 위원을 축출할 수 없다. (4)

2 번 항목: 상법위 운영지침 4.2 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 [비대면 상법위 회의 소집 시간을 14 일로 축소함]

4.2 4.1 항에 명시된 정기 회의들 외에, 전권위원회는 특별 회의들을 소집할 수 있고, 그러한 특별 회의가 소집되려면 다음 방법들 중의 하나를 통해서 소집되어야 한다. 즉:

ㄱ. 전권위원회의 임원들은 적어도 30 일간의 기간을 두고 통보하면 어느 때라도 대면 특별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전화나 화상의 특별회의는 적어도 14 일 전에 통보하면 소집할 수 있다.

ㄴ. 전권위원회는 어느 정기 회의에서라도 구체적인 소집 장소와 시간을 명시해서 특별회의 소집을 통보할 수 있다. 특별회의 소집 통보는즉시로 서기가 결석한 모든 전권위원회 위원들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ㄷ. 만일 전권위원회 회원 중 적어도 여섯 명이 서면으로 특별 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면, 위원장과 서기는 요청 서를 받은 때부터 10 일 내에 소집 통지를 해야 한다.

특별 회의의 소집은 회의에서 다루어질 안건을 명시 해야 하고, 명시된 안건 이외의 다른 안건을 다루려고 하면, 투표해서 출석 회원 사분의 삼의 찬성이 있어야만 하는데, 어떤 경우에도 전권위원회 회원 중 찬성 13 표 미만이 되어서는 안된다. 나아가서, 소집시 명시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취해서는 안된다. 임원들이 전권위원회 위원들에게 회의 날짜 14 일 전에 회의 소 집을 우편이나 전자 수단으로 통보 했다면 추가 안건을 고려하여 소집 통보를 수정 할 수 있다. 상법위 대면 특별회의는 소집이 공고된 날 이후부터 30 일 이내로 일정을 잡을 수 없다.

~~이 4.2 항 하에 소집된 어떤 특별 회의도 전화 회의로 주재 될 수 있다.~~

ITEM 3: Amend *OMSJC 8.4.a and b* as follows.– [Increases font size for Preliminary Briefs and increases page length to accommodate it.]

- 8.4.** a, Any brief filed hereunder must be typewritten or printed on 8-1/2 x 11 inch paper, with no smaller than ~~10~~ 12 point type, with 1 inch margin on all sides, line numbering that restarts on each page, and may be single spaced. Pages must be numbered.
- b. The preliminary brief filed by a party shall not exceed ~~10~~ 12 pages in length. Any supplemental brief filed by a party shall not exceed ~~5~~ 6 pages in length.

ITEM 4: Amend *OMSJC 8.4.a* as follows.– [Requires briefs to be filed electronically.]

- 8.4** a. Any brief filed hereunder must be typewritten All briefs shall also be filed by electronic means with the Stated Clerk.

3 번 항목: 상법위 운영지침 8.4.ㄱ과 ㄴ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 [예비 소송 개요의 글꼴 크기 확대와 이를 수용하기 위한 쪽수의 증가]

- 8.4.** ㄱ. 어떤 소송 개요이든 이후에 이로써 접수되는 것은 규격이 8-1/2x11 인치 용지에 타이프되거나 인쇄된 것으로서, 글 자체가 10 12 포인트보다 작아서는 안되며, 사방 여백이 1 인치여야만 하고, 줄 번호 매김은 매 쪽 다시 시작 하며, 줄의 간격이 한 줄일 수는 있다.
- ㄴ. 당사자에 의해서 접수된 예비 소송 개요는 길이가 10 12 쪽을 초과 할 수 없다. 당사자에 의해서 접수된 보조 소송 개요는 어떤 경우라도 길이가 5 6 쪽을 초과 할 수 없다.

4 번 항목: 상법위 운영지침 8.4.ㄱ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 [개요들의 전자적 제출을 요구함]

- 8.4** **a.** Any brief filed hereunder must be typewritten All briefs shall also be filed by electronic means with the Stated Clerk.
- ㄱ. 어떤 소송 개요이든 이후에 이로써 접수되는 것은 규격이 8-1/2x11 인치 용지에 타이프되거나 인쇄된 것으로서, 글 자체가 10 12 포인트보다 작아서는 안되며, 사방 여백이 1 인치여야만 하고, 줄 번호 매김은 매 쪽 다시 시작 하며, 줄의 간격이 한 줄일 수는 있다. 모든 개요는 반드시 서기에게 전자적 수단으로 접수해야 한다.